



뉴욕시

중재 및 징계 기준

NYCTM

Department of
Education

Dennis M. Walcott
Chancellor

규율규정과 학생
권리 및 책임 규정,
유치원 - 12학년

2011년 9월부터 유효



데니스 M. 월콧
교육감

Kathleen Grimm
재정 및 행정 담당 부교육감

Elayna Konstan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
수석 담당관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관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지역, 시민권/체류 신분, 연령, 장애, 결혼 유무, 성별,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표현방법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운영방침으로 삼고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성 희롱이 없는 업무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준수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Office of Equal Opportunity, 65 Court Street, Brooklyn, New York, 11201, (718) 935-3320.

뉴욕시 징계 및 중재 기준(규율규정과 학생 권리 및 책임 규정, 유치원-12학년)은 교육 간행물 담당실 (Office of Instructional Publications: Christopher Sgarro 디렉터)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및 구성: Tobey Hartman

뉴욕시 중재 및 징계 방법 기준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과 직원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며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환경 조성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본 간행물에 포함된 학생의 권리 및 책임 규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에서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돕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존엄성과 상호 존경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품행 기준: 책임 및 지원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즉,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학생이 지켜야 할 품행기준과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뉴욕시 중재 및 징계 방법 기준 (규율규정)에는 마약 또는 흥기와 관련된 사건 등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측이 취할 수 있는 징계 및 중재 조치와 지도 중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장애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443에 설명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이의 제기 절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규율규정은 모든 학생에게 일관성 있고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과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 수석 담당관 또는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의 재량권과 교육적 판단력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장, 교사, 학교 직원, 학생 및 학부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학습 과정을 크게 방해하는 학생에게 취해질 수 있는 징계 조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나 규율규정의 위반은 학생이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 중재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에 주의해야 하며,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율규정에 설명된 기준들은 수업시간 중 학교 내, 등교 전과 방과 후, 교내, 교육청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도중, 학교가 후원하는 모든 행사 및 교내 밖에서 교육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학교 공동체의 건강, 안전, 윤리, 또는 복지에 위해 될 수 있는 행동에 모두 적용됩니다. 의사소통, 몸짓, 또는 부적절한 표현과 관련된 위반 행위의 형태는 문자, 이메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포함한 구두, 서면 또는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합니다.

교직원은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와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학생 품행 장려

각 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적인 면과 사회성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적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와 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적 감성을 학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친화적 성격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사회적 감성 학습은 학생들이 감정 파악 및 조정,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증진,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책임감 있는 결정 및 힘든 상황을 건설적이고 도덕적으로 처리하기 등을 포함한 삶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부정적인 행동 및 학생들이 품행 기준을 지키지 않아 징계를 받는 등의 결과를 방지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학생 참여는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사회적/감성적 성장을 배양하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친화적 활동에 참여할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성인과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을 제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우려 사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 차원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함, 학생 리더십 개발, 학업 및 공동 교과과정 분야의 다양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 정정할 수 있는 의견 활용 및 학교 차원의 긍정적인 행동 시스템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예방 및 중재 종합 안내 프로그램과 더불어 경험, 전략 및 능력과 함께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방 및 중재

교직원은 학습 효과를 최대화 하고 학교 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 담당자, 교사, 카운슬러 및 기타 교직원은 학생의 품행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중재와 예방 전략을 통해 학생과 연관을 맺고 이런 전략들을 장애가 있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과 학부모와 논의하여야 합니다. 중재와 예방 접근법으로는 개인 또는 가족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 지도 지원 및 서비스; 사회적 감성적 학습, 분쟁 해결 및 또래 명상/상담, 분노 관리 및 대화방법 습득; 대안 교육 교제 및 교수법 활용; 강화 서비스; 및 대체 학급으로 배정; 기능 행동 평가와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중재안이 조기 중재 전략으로 개발 및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요하는 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 교직원은 언제라도 해당 학생을 즉각 특수 교육 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생과 연관을 맺고 그들에게 명확한 목적을 이해 시킬 수 있는 중재와 예방 전략의 활용을 통하여 교직원은 학생의 학습과 사회적 감성적 성장을 촉진하고 학교의 규정과 정책을 따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공조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인지하고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참여 도모는 전화 및 서면 의견교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에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모범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지원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규율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학생의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사 및 기타 학교 교직원과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학생을 대할 때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 상담하도록 합니다. 학교와 가정 간에 가능한 한 많은 상담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 지도 카운슬러, 학부모, 1명 이상의 학생 담당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학생 지도 회의(Guidance Conference)는 학부모들에게 의견제시를 장려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적절한 경우 학생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지도 중재를 논의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 또는 필요하다면 가정정보 지원실(Office of Family Information and Action)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교육감 규정 A-412 참조)

출석

교직원은 무단 결석 같은 출석 문제나 교육적 방임을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적절한 도움, 중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단 결석의 경우, 담당 교직원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학생 지도를 통한 중재, 상담 위탁 의뢰, 방과 후 프로그램 위탁 의뢰, 가정법원에 관리 대상자(Person in Need of Supervision: PINS) 신청서 제출 및 아동 보호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에 위탁 의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 중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하고 학교의 출석위원회 또는 학생업무담당 위원회(Pupil Personnel Committee)는 무단 결석 사례들을 검토해야 하며 출석 담당 교사, 학생 주임, 지도 카운슬러, 교사, 사회 복지사와 그 외 교직원과 협력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육적 방임은 교육감 규정 A-750 1.5 항에 따라 뉴욕주 중앙 등록부(New York State Central Register)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도 중재 조치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다양한 예방 및 중재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 전후로 학기 전반에 걸쳐 모든 학생을 위한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율규정은 학생이 올바르게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이에 따른 여러 조치와 더불어 학생의 행위의 종류에 관련해 고려되는 지도 중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지도 중재 조치를 포괄적인 징계 조치의 일부분으로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학 기간을 포함한 징계 절차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런 중재조치는 학생의 품행을 개선하고 위반 행위의 재발생을 막고 좋은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는 각 페이지의 징계 조치 내용과 함께 나열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중재 조치의 종류

- **학부모 참여 도모:** 가능한 경우 학교 상담교직원 및/또는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비밀 정신건강 서비스와 중재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나 단지 이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평가, 개인 및 집단, 가족 치료, 교사 의견 구하기,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적 전략 등.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학교에 상담 직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간단한 중재 조치, 상담과 평가, 심사, 위기 중재,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으로의 위탁 의뢰 등이 포함됩니다.
- **학생 지도 면담:** 교장, 교사는 학생과 적절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의 목표는 학생의 품행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며 학생의 품행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개인적 및 사회적 관계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복위주 접근법:** 회복위주 접근법은 학교에서 갈등이 조성되거나 심화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웰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본 접근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워주고 청소년들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끄는 문제에 대처하며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는 것을 돕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해를 끼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질 기회를 제공하며 가능한 많이 자신의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회복 탐구, 회복 토론, 회복 순환, 중재 및 공식 회복 컨퍼런스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그룹 상담:** 상담은 학생이 출석, 행동 및 성공적인 학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비밀리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감정의 배출구입니다. 학생들은 목표를 세워 이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웁니다. 상담교사는 정기적으로 학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여 학생의 학업 진전 및 개인적 발달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 **또래 중재:** 또래 중재 학생은 급우가 본인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래 중재 학생은 분쟁 해결 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이 새로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학생을 카운슬러, 교사, 학생 및 지도 담당에게 배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의 개인적 학업적 및 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분쟁 해결:** 분쟁 해결은 학생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기회입니다.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은 관련 활동사항을 통해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및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분쟁 및 분노 조절, 귀담아 듣기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본인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학생, 교사와 적절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교사 또는 교장은 학생의 품행이 향상되고 수업에 잘 참여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까지 학부모/보호자에게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 **학생 업무 담당팀(Pupil Personnel Team: 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학생 업무 담당팀은 예방 및 중재 전략과 지원을 하고 여러 징계처분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공을 돕는 학교 기반 부서입니다. 의뢰가 된 각 학생마다 관리자가 배정되어 학생이 학업적 및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학교 공동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학생들은 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좋은 일에 시간을 보내고 불량한 행동을 피하며 봉사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단체(Community Based Organization: CBO)에 학생 위탁 의뢰:** 방과후 프로그램, 개별 또는 그룹 상담, 리더십 개발, 분쟁 해결 및 개인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학생을 지역사회단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학생이 불법 마약, 마약 장비 및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복용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학교내에 또는 지역사회 단체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에 의뢰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학생이 사귀고 있는 상대방을 조정하기 위해 신체적, 성적 및/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관련된 협박을 반복할 때,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및 이러한 행위를 한 학생 모두 상담, 지원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학교에 따로 또는 각기 다른 지역사회 단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재나 분쟁 해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 남용에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없습니다.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학생 한 명 또는 학생 그룹이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을 다른 학생 및 그룹에 가했을 때, 피해 학생 및 이런 행동을 취한 학생 양쪽 모두 교직원 및 지역사회 단체에서 적절한 상담,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따로 추천되어야 합니다. 중재나 분쟁 해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없습니다.

위반 행위 및 징계 조치의 범위

학교 교직원은 징계조치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규율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적절한 징계 조치 및 중재 방법을 결정할 때 규율규정을 참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연령, 성숙도 및 과거의 징계 기록 (위반 행위의 성격, 빈도 및 각 위반 행위에 처해진 징계조치 내용 등을 포함), 징계 조치에 처해지기까지의 주변 정황, 해당될 경우 학생의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 품행중재 방안 (BIP) 및 504 적응지원 계획. 지도 중재 및 기타 학교 기반 리소스와 최소로 가혹한 징계 조치를 통해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적절한 징계 조치는 예방과 효과적인 중재를 강조하고 학생의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긍정적인 학교 문화 개발을 장려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반행위를 한 학생은 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교사, 교장,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 수석 담당관 또는 기타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에 의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할 모든 품행기준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은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며 규율규정과 함께 배포되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등급

뉴욕시 규율규정은 학생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각 위반행위에는 교사, 교장,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 수석 담당관 또는 기타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이 행사할 수 있는 징계조치 등급이 최저 한도로부터 최고 한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행위는 반항적 행위에서부터 심각한 위험 행위 및 폭력 행위에 이르기까지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는 적절한 징계조치의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이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중재조치는 가장 낮은 징계조치 등급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등급은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와 6학년에서 12학년까지 명확히 구분되어 학생의 연령과 일반적인 성숙도를 고려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위반사항들은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율규정에는 예전에 징계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학생들은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학생은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이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담당 교직원은 가능한 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전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강도가 낮은 징계 조치를 취하고 상담 중재 조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

학생 기록부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820을 따라야 합니다. 정학 및 퇴실 조치는 반드시 관련된 교육감 규정, 주 교육법 및 연방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 여름 학교 동안에 사용되는 학생 징계 절차는 정규 학년도에 사용되는 징계절차와 다르며, 별도로 간행됩니다.)

이의제기

교육감 규정 A-443 에 따라, 교장의 정학 조치는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 또는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장의 정학(예,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기타 교육감의 피지명인 또는 지역 교육장에 의한 정학)조치에 대한 이의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규정서

교육감 규정서 전문을 www.nyc.gov/schools/Rule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학생에 대한 5일 이상의 정학은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지역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본 문서 전반에 걸쳐 사용된 “교육장의 정학 (Superintendent's suspension)”이라는 용어는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Community Superintendent)이 조치한 두 가지 정학 모두를 의미합니다.

서문

학생, 학부모 및 직원의 복리를 위해 상호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 것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목표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상호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학생 개개인을 위한 풍부한 학습 경험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다양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I.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공립학교는 성숙도에 따라 각자 다른 권리를 갖은 다양한 연령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학생 권리”입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21세가 되면 그 때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영어학습학생 (English Language Learners)으로 판정된 학생의 경우 이중언어 교육 또는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장애 학생의 경우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2.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와 이런 문제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고 느꼈다면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는 권리(교육감 규정 A-830, A-831 및 A-832 참조)
3.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체중, 성적 성향,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 받을 권리
4. 학년 초, 또는 학기 중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 즉시, 규율규정과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 및 책임 규정 등 학교 방침 및 절차 규정이 적힌 인쇄물을 받을 권리
5. 교과목 및 시험을 포함하여 졸업장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6. 건강 조건, 인지 능력 및 언어 능력 시험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7.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받고 선택 과목을 고르는 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권리
8.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9.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과목의 채점 기준을 알 권리, 그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한 과제물의 점수를 받을 권리
10. 교사나 학교를 통해 또는 공식적인 진척도 보고서를 통해 학습 진척 상황을 통보 받을 권리
11.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히 통보 받을 권리
12.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 받을 권리
13. 고등학생의 경우 본인의 학사 기록을 검토할 권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는 학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맡은 성인과 해당 학생에게만 허락됩니다.)
14. 학교의 학생 기록 취급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15. 고등교육 기관 및/또는 모병 기관에 연락 정보를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하거나 부모를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6.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성장과 진로 및 직업 개발에 있어 안내, 상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II. 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뉴욕시교육청이 수립한 방침 및 절차에 따라, 모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여 모임을 갖고 평화적이고 책임 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 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2. 평등 이용법(Equal Access Act)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단체, 사교 및 교육 클럽/팀, 정치, 종교, 철학 모임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3.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위원회를 대표 할 권리 (필요 시 투표권도 행사)
4. 책임 있는 발행 방식과 정당한 교육적 관심사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정 내에서 학교 생활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와 견해를 표현하는 학교 신문과 학교 뉴스레터를 발행할 권리
5.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문, 글 또는 정치적 전단을 학교 내에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단, 배포 시간, 장소,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6.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다양한 버튼, 배지, 및 완장을 착용할 권리. 그러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혼란케 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7.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일 권리. 그러나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8. 교복 관련 교육청 방침 및 종교적인 표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 복장이 위험하거나 또는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예외
9. 자신의 신분, 신분증, 소지품 등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 내에서 사용이 허락된 개인 소지품을 학교 건물 안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권리
10. 몸 수색 등과 같은 부당하거나 무차별적인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11.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교육감 규정서 A-420 및 A-421에 의거);
12. 충성의 맹세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III.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모든 학생은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율규정 및 학교 규칙과 규범을 제공받을 권리.
2. 무엇이 적절한 행동이며, 어떤 행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지 알 권리
3. 학생의 학교 내 교육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에게 상담 받을 권리
4.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처분과 결과를 알 권리
5. 자신에게 부과된 징계 조치의 이유를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 받을 권리
6.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어 정학, 또는 퇴실 조치될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7.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 및 책임과 관련 담당 교직원이 내린 조치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 권리
8. 면담이나 공청회에 학부모나 부모 관계에 있는 성인 및 대리인과 동반 참석할 수 있는 권리
9.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직원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10. 자신의 학생 기록에 입력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리

IV. 18 세 이상 학생의 추가적 권리

연방 가족교육권 및 신상보호법("FERPA")에서는 18 세가 된 학생들에게 교육기록과 관련된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8 세 이상의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820 에 의거하여 뉴욕시 교육청이 학생의 요청서를 접수한지 45 일 이내에 자신의 교육 기록을 요청, 조사,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8 세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기타 FERPA 의 신상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 교육감 규정 A-820 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세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 기록 중 개인 신상을 노출시킬만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FERPA 에서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특별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가 허용된 한 가지 경우는, 학교 운영자가 학생 교육에 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기록을 검토해야 할 경우, 이들에게 정보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자에는 뉴욕시 교육청 직원 (행정직, 관리직, 교사 및 기타 강사들 또는 보조교사들) 및 뉴욕시 교육청에서 자체 직원들만으로 소화할 수 없는 어떤 특정 서비스나 업무, 또는 기능을 맡긴 사람들(에이전트, 계약 및 하청직, 컨설턴트 등)이 포함됩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가 허용된 또 다른 경우는 귀 자녀가 입학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재학하고 있는 타 학교의 운영자들이 귀 자녀의 등록이나 전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18 세 이상의 학생들은 뉴욕시 교육청에서 FERPA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미 교육부에 불만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만신고는 다음의 FERPA 주관부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

V. 학생의 책임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래 기술된 책임을 위반한 경우 규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학생은 자신과 사회를 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칙적으로 시간을 엄수해 등교하고, 모든 교육 영역에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
2. 필요한 준비물을 갖춰 수업에 임할 준비를 하고 교과서 및 기타 학교 기기를 조심스럽게 다룰 책임
3. 교실 및 학교 건물 출입과 관련하여 학교 규정을 준수할 책임
4. 흥기, 불법 약물, 규제 물질 및 술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울 책임
5.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할 책임

6.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
7.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할 책임
8. 학교 자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사적 또는 공동 소유물을 존중해야 할 책임
9.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신분, 체중, 성적 성향, 신체 및 정서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및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타인을 대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삼가 할 책임
10.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책임
11.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이해 증진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할 책임
12.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극단적인 방법을 피해야 할 책임
13.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책임
14. 학생회를 학생 참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긍정적인 지도력을 제공할 책임
15. 교직원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관심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16. 책임 있는 저널리즘의 윤리 규약을 준수할 책임
17.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할 책임
18.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책임
19. 질서 있게 모임을 갖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결정을 존중할 책임
20.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개인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올 책임
21. 학교 체육관, 체육 수업,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
22. 학교 규율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책임
23. 동료 학생들에게 정해진 학교 방침과 관례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지도력을 행사할 책임
24. 학습 진척도, 사고 및 교육 행사 등 학교와 관련된 사안을 부모에게 알리고,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학부모에게 전달해야 할 연락 사항을 반드시 부모에게 전해야 할 책임

유치원 -5 학년 1 등급

위반- 반항행위

- A01 학교에 무단 결석한 경우 (A-D에 한함)
- A02 착용해야 하는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 (교복 착용 방침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면서 교복 미착용 허가를 부모가 미리 받지 않은 학생에게만 적용) (A 및/또는 D에 한함)
- A03 지각한 경우
- A04 반입 금지된 기기나 물건을 허락 없이 학교에 가져온 경우 (예, 휴대폰, 호출기, 통신/오락 기기)
- A05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한 경우
- A06 학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예, 교실, 도서관 또는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운 경우)
- A07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경우
- A08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복장, 머리 장식품(예, 캡 또는 모자) 또는 기타 물건을 착용한 경우
- A09 문서화된 교육청 방침 및 학교 규칙에 위반되는 자료를 학교 내에 게시 또는 배포한 경우
- A10 학교 컴퓨터, 팩스기, 전화기 또는 기타 전자 장비나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 특정 복장이나 머리 장식품이 종교적인 상징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는 CFN의 청소년 개발 연락담당과 연락해야 합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upil Personnel Team: 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ommunity Based Organization: CBO)에 학생 위탁 의뢰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A. 교사의 훈계
- B. 학생/교사 면담
-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유치원 -5 학년 2 등급

위반 -질서 문란 행위

- A11 흡연 및/또는 성냥 또는ライター 소지(A-D 만)
 - A12 도박
 - A13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거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 A14 교직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도한 경우
 - A15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룬 경우
 - A16 학교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A17 담당 교직원의 허락 없이 교실이나 학교를 이탈한 경우
 - A18 부적절하거나 타인이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또는 타인의 생식기관을 만진 경우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에 한함. 4-5학년의 경우는 위반 사항 A28 참조. 밀치거나 떠민 경우는 A24 참조)
 - A19 교육청의 인터넷 사용 방침(Internet Use Policy)을 위반한 경우 (예: 교육청의 시스템을 비교육적 목적, 보안/사생활 침해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A20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 a. 시험 부정행위 (예: 다른 사람의 시험 답안지를 베껴 온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 출제자/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경우, 시험 중 허락 없이 다른 학생과 답을 의논한 경우, 장차 치를 시험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훔치거나, 옮기거나, 구한 경우, 타인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학생이 자신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경우, 시험지를 미리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경우, 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지나 답안지를 얻은 경우)
 - b. 표절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글을 원저자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인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기타 출처에 게시된 문서 도용) (4-5학년만 해당)
 - c. 공모 (점수를 받기 위해 작문 준비를 하는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하게 협력한 경우)
 - A21 *같은 학년도 동안 1등급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1등급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2등급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1등급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2등급 징계 조치입니다.)
- * 이 위반사항은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의 1 등급 위반 A04-A10 에 만 적용됩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A. 교사의 훈계
- B. 학생/교사 면담
-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 학기제의 한 학기 중 3 번, 3 학기제의 한 학기 중 2 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 G. 교장의 정학 조치

유치원 -5 학년 3 등급

위반 -심각한 질서 문란 행위 및 위험 행위

- A22 반항적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불복종한 경우
 - A23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민족적 배경, 피부색,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체중, 종교,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사항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 A24 학생 또는 교직원을 밀기, 제치거나 이에 유사한 행동 (예: 소란 피우기 또는 싸움 걸기) 또는 사물 집어 던지기 (예: 분필) 또는 타인에게 침 뱉기 (싸움에는 A34 적용)
 - A25 문서화된 학교 규정에 반하여 승인 받지 않은 방문객을 학교에 데려오거나 들어오도록 허락한 경우
 - A26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고의로 소유한 경우
 - A27 컴퓨터나 인터넷, 혹은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 기록이나 서류를 고치거나 변경 또는 위조한 경우
 - A28 부적절하거나 타인이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타인의 생식기관을 만진 경우 (4-5학년에 한함.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경우는 위반 사항 A18 참조. 밀치거나 떠민 경우는 A24 참조)
 - A29 *폭력조직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예: 폭력조직 복장 및 장신구, 몸짓, 신호를 하거나 벽에 낙서**)를 한 경우 (4-5학년에 한함) (D-I에 한함)
 - A30 **학교 자산, 직원, 학생 및 기타 다른 사람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또는 물품에 낙서를 한 경우 (C-I에 한함)
 - A31 타인을 비방하는 자료 및 문건을 게시 및 배포한 경우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포함)
 - A32 ***같은 학년도 동안 2등급 위반을 계속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2등급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3등급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2등급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3등급 징계 조치입니다.) (D-I에 한함)
- * 특정 행동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담당 교직원들은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폭력조직 전담부서(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s Gang Unit)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물품의 대대적인 보수를 요구하는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교육장은 30-60 수업일 후 조기복귀를 위한 자동 검토와 함께 30-90 수업일간 정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이 위반 사항은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의 2등급 위반 사항 A11-A21에만 적용됩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A. 교사의 훈계
- B. 학생/교사 면담
-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 G. 1-5일간의 교장의 정학 조치
- 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유치원 -5 학년 4 등급

위반-위험 행위 및 폭력 행위

- A33 폭력, 상해 또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포함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저속하거나 상스럽거나 천박한 그림 등을 묘사하는 자료 및 문건을 게시, 배포, 전시 또는 나눈 경우(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포함) (D-I에 한함)
- A34 일반적인 장난이 아닌 경상해를 초래하거나 할 수 있는 언쟁 및 공격적인 행동 또는 A24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기타 사소한 싸움을 하는 경우
- A35 위압행위 또는 타인에게 폭력 행사, 상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 A36 *스쿨버스에서 상해 위험이 큰 행동을 한 경우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
- A37 위협을 하거나 인터넷 상의 괴롭힘을 포함한** 약한 자를 괴롭히는 행위-학생이나 교직원을 협박, 스토킹, 또는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게 만드는 행위;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민족적 배경, 피부색,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체중, 종교, 종교적 관습,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사항과 관련하여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 위해를 가하겠다는 육체적, 언어적 모욕 및 협박을 한 경우
- A38 성적 암시가 담긴 말이나 제안을 하거나 성적인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행위를 한 경우 (예: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선정적인 메시지 또는 이미지를 보내거나 게재하는 행위) (4-5학년에 한함)
- A39 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이나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 불법 약물, 마약 사용을 위한 물품 및 술을 소지한 경우

* 교육감 규정서 A-801 에 따라 학생은 스쿨버스에 이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전자 통신을 통한 위협 및 괴롭히는 행위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 G. 1-5일간의 교장의 정학 조치
- 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J. 수업일수 기준 30 일에서 90 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조치와 수업일수 기준 30-60 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

유치원 -5 학년 4 등급 (계속)

위반- 위험 행위 및 폭력 행위

- A40 완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타인이나 학교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 갔거나 가져가려고 시도한 경우
- A41 허위로 화재경보 또는 기타 재해 경보를 울린 경우 (D-I에 한함)
- A42 폭파 위협을 한 경우(D-I에 한함)
- A43 난폭한 행동 및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 및/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조성 (예: 라이터, 벨트 버클, 우산, 또는 레이저포인터)
- A44 난폭한 행동 및/또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여 중상해를 초래 (예: 라이터, 벨트 버클, 우산, 또는 레이저포인터)
- A45 ** 방화한 경우 (H-M에 한함)
- A46 소동을 부추기거나 야기시킨 경우 (G-J에 한함)
- A47 *범주 II에 정의된 흥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 (G-J에 한함)
- A48 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이나 처방 약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약물 및/또는 술을 음복한 경우
- A49 같은 학년도 동안 3등급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3등급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4등급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3등급 위반 행위를 반복 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4등급 징계 조치입니다.)

* 범주 II 에 나열된 품목 중,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손톱 가는 도구)을 소지한 혐의로 정학을 요청하기 전에, 교장은 경감요인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합니다. 또한, 교장은 가짜 총이 진짜 총처럼 보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색깔, 크기, 모양, 외관 및 무게 등의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징계 조치는 케이스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 G. 1-5일간의 교장의 정학 조치
- 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J. 수업일수 기준 30 일에서 90 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조치와 수업일수 기준 30-60 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

유치원 -5 학년 5 등급

위반 -심각한 위험 행위 및 폭력 행위

- A50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A51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I-J에 한함)
- A52 ***학생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I-J에 한함)
- A53 ***집단 폭력 사건 계획, 선동 및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과 함께 가담한 경우
- A54 ***폭력조직과 관련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
- A55 성적 폭력 및 강요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경우 (4-5학년에 한함) (I-J에 한함)
- A56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및/또는 술을 판매 또는 공급 (I-J에 한함)
- A57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 I 에 정의된 흉기를 소지 또는 판매한 경우 (I-J에 한함)
- A58 ***범주 II에 정의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 학생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협박하거나 시도한 경우 (I-J에 한함)
- A59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 I 에 정의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기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협박하거나 시도한 경우
- A60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 I 에 정의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경우
- A61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L에 한함)

* 특정 행동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담당 교직원들은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폭력조직 전담부서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징계 조치는 위반 사항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3학년 징계 조치는 D-L범위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4-5학년 징계 조치는 안내한 바와 같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 되어야 함) (유치원-3학년 만 대상)
- G. 1-5일간의 교장의 정학 조치(유치원-3학년 만 대상)
- 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유치원-3학년 만 대상)
-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J. 수업일수 기준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조치와 수업일수 기준 30-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
- K. 6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조기 복교가 검토되는 교육감의 1년 정학 조치 및 대안 프로그램 배정
- L. 조기 복교 가능성 없이 교육감의 1년 정학 조치 및 대안 프로그램 배정

6 학년 -12 학년 1 등급

위반 -반항 행위

- B01 학교에 무단 결석한 경우 (A-D에 한함)
- B02 착용해야 하는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 (교복 착용 방침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면서 교복 미착용 허가를 부모가 미리 받지 않은 6-12학년 학생에게만 적용) (A-D에 한함)
- B03 수업 불참 (등교 후 한 과목 이상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 B04 학교에 지각한 경우
- B05 반입 금지된 기기나 물건을 허락 없이 학교에 가져온 경우 (예, 휴대폰, 호출기, 전자 통신/오락 기기)
- B06 학교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한 경우
- B07 학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예, 교실, 도서관 또는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운 경우)
- B08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경우
- B09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복장, 머리 장식품(예, 캡 또는 모자) 또는 기타 물건을 착용한 경우
- B10 서면화된 교육청 방침 및 학교 규칙에 위반되는 자료를 학교 내에서 게시 또는 배포한 경우
- B11 교직원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B12 학교 컴퓨터, 팩스기, 전화기 또는 기타 전자 장비나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 특정 복장이나 머리 장식품이 종교적인 상징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는 청소년 개발 수석 디렉터 (Senior Youth Development Director)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upil Personnel Team: 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ommunity Based Organization: CBO)에 학생 위탁 의뢰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A. 교사의 훈계
- B. 학생/교사 면담
-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디텐션,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6 학년 -12 학년 2 등급

위반 -질서 문란 행위

- B13 흡연 및/또는 성냥 또는ライター 소지(A-D 만)
- B14 도박
- B15 모독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거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 B16 교직원에게 거짓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도한 경우
- B17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룬 경우
- B18 학교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B19 *같은 학년도 동안 1등급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1등급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2등급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1등급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2등 징계 조치입니다.)

* 이 위반 사항은 6 학년에서 12 학년까지의 1 등급 위반 B05-B12 에만 적용됩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A. 교사의 훈계
- B. 학생/교사 면담
-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디텐션,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 G. 1-5일간의 교장의 정학 조치

6 학년 -12 학년

3 등급

위반 -심한 질서 문란 행위 및 위험한 행위

- B20 학생 담당 교직원의 허가 없이 교실이나 학교를 이탈한 경우
- B21 반항적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불복종한 경우
- B22 허가 없이 학교 건물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한 경우
- B23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민족적 배경, 피부색,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체중, 종교,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 사실에 근거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C-1 에 한함)
- B24 학생 또는 교직원 밀기, 제치기나 이에 유사한 행동 (예: 소란 피우기 또는 싸움 걸기) 또는 사물 집어 던지기 (예: 분필) 또는 타인에게 침 뱉기 (C-1 에 한함) (싸움에는 B37 적용)
- B25 문서화된 학교 규정에 반하여 승인 받지 않은 방문객을 학교에 데려오거나 들어오도록 허락한 경우
- B26 *폭력조직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예: 폭력조직 복장 및 장신구, 몸짓, 신호를 하거나 벽에 낙서**)를 한 경우 (D-1 에 한함)
- B27 컴퓨터나 인터넷, 혹은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 기록이나 서류를 고치거나 변경한 경우
- B28 **학교 자산, 직원, 학생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물품에 낙서를 한 경우 (D-1 에 한함)
- B29 허락 없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소유할 경우
- * 특정 행동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담당 교직원들은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폭력조직 전담부서(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s Gang Unit)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물품의 대대적인 보수를 요구하는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교육장은 30-60 수업일 후 조기복귀를 위한 자동 검토와 함께 30-90 수업일간 정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A. 교사의 훈계
- B. 학생/교사 면담
-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 G. 1-5일간의 교장의 정학 조치
- 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I. **수업일수 기준 6 일에서 10 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6 학년 -12 학년 3 등급 (계속)

위반 -심한 질서 문란 행위 및 위험한 행위

- B30 학교 또는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 B31 교육청의 인터넷 사용 방침(Internet Use Policy)을 위반한 경우 (예: 교육청의 시스템을 비교육적 목적, 보안 및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B32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 a. 시험 부정행위 (예: 다른 사람의 시험 답안지를 베끼는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 출제자/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경우, 시험 중 허락 없이 다른 학생과 답을 의논한 경우, 아직 치르지 않은 시험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훔치거나, 옮기거나, 구한 경우, 다른 학생의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학생이 자신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경우, 시험지를 미리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경우, 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지나 답안지를 얻은 경우)
 - b. 표절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글을 원저자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인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기타 출처에 게시된 문서 도용)
 - c. 공모 (점수를 받기 위해 작문 준비를 하는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하게 협력한 경우)
- B33 타인을 비방하는 자료 및 문건을 게시 및 배포한 경우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포함)
- B34 같은 학년도 동안 2 등급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2 등급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3 등급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2 등급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3 등급 징계 조치입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A. 교사의 훈계
- B. 학생/교사 면담
-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 D. 학부모 면담
-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디텐션,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 G. 1-5일간의 교장의 정학 조치
- H. 즉각 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6 학년 -12 학년 4 등급

위반-위험 행위 및 폭력 행위

- B35* 성적 암시가 담긴 말이나 제안을 하거나 성적인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행위를 한 경우 (예: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선정적인 메시지 또는 이미지를 보내거나 게재하는 행위)
- B36* 폭력, 상해 또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저속하거나 상스럽거나 천박한 그림 등을 묘사하는 자료 및 문건을 인터넷을 포함하여 게시, 배포, 전시 또는 나눈 경우
- B37* 일반적인 장난이 아닌 경상해를 초래하거나 할 수 있는 언쟁 및 공격적인 행동 또는 B24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기타 사소한 싸움을 하는 경우 (D-J 에 한함)
- B38* 위압행위 또는 타인에게 폭력 행사, 상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 B39* **학교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의 원인을 제공하여 상해 위험이 큰 행동을 한 경우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
- B40* 위협을 하거나 인터넷 상의 괴롭힘을 포함한*** 약한 자를 괴롭히는 행위-학생이나 교직원을 협박, 스토킹, 또는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게 만드는 행위;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민족적 배경, 출신 국가, 피부색, 시민권/체류 신분, 체중, 종교, 종교적 관습,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사항과 관련하여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 위해를 가하겠다는 육체적, 언어적 모욕 및 협박을 한 경우
- B41* 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이나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 불법 약물, 마약 사용을 위한 물품 및 술을 소지한 경우
- B42* 허위로 화재경보 또는 기타 재해 경보를 울린 경우 (D-J 에 한함)
- B43* 폭파 위협을 한 경우(D-L 에 한함)

* B35-B43 위반에 한해 징계 조치가 D-M 으로 확대된다.
 ** 교육감 규정서 A-801 에 따라 학생은 스쿨버스에 이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전자 통신을 통한 위협 및 괴롭히는 행위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 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D. 학부모 면담
- E. 교내 훈육조치 (예, 디텐션, 특별활동 및 점심시간 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교실에서 제외시키는 조치 (한 시메스터 중 세 차례, 또는 한 트라이메스터 중 두 차례 이상 교사에 의해 교실에서 제외되는 조치가 취해진 학생은 향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학교장 정학에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G. 1-5일간의 교장의 정학 조치
- 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J. 수업일수 기준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조치와 수업일수 기준 30-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
- K. 6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조기 복교가 검토되는 교육장의 1년 정학 조치 및 대안 프로그램 배정
- L. 조기 복교 가능성 없이 교육장의 1년 정학 조치 및 대안 프로그램 배정
- M.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교육 학생들의 경우에 한함)

6 학년 -12 학년 4 등급 (계속)

위반-위험 행위 및 폭력 행위

- B44* 완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허락 없이 타인 또는 학교의 물건을 가져 가거나 가져 가려고 시도한 경우 (D-J 에 한함)
- B45 난폭한 행동 및/또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여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조성 (예: 라이더, 벨트 버클, 우산, 또는 레이저포인터)(D-M)
- B46 난폭한 행동 및/또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여 중상해를 초래 (예: 라이더, 벨트 버클, 우산, 또는 레이저포인터) (G-M에 한함)
- B47 방화를 한 경우(H-M에 한함)
- B48 소동을 부추기거나 야기시킨 경우(G-M에 한함)
- B49 *범주 II 에 정의된 흥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 정의된 흥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 (G-M에 한함)
- B50 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 또는 처방 약물을 사용하거나 불법 약물 및/또는 술을 음복한 경우경우(D-M)
- B51 **같은 학년도 동안 3등급 위반 사항을 계속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3등급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4등급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3등급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4등급 징계 조치입니다.) (G-J에 한함)
- * B44, B45 및 B50 위반에만 해당되는 징계 내용이 설명된 바와 같이 D까지 연장됨.
- ** 범주 II 에 나열된 품목 중,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손톱 가는 도구)을 소지한 혐의로 정학을 요청하기 전에, 교장은 경감요인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합니다. 또한, 교장은 가짜 총이 진짜 총처럼 보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색깔, 크기, 모양, 외관 및 무게 등의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 이 위반사항은 6 학년에서 12 학년까지의 3 등급 위반사항 B21-B33 에만 적용됩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D. 학부모 면담
- E. 교내 훈육조치 (예, 디텐션, 특별활동 및 점심시간에서 제외)
- F. 교사에 의한, 교실에서 제외시키는 조치 (한 시메스터 중 세 차례, 또는 한 트라이메스터 중 두 차례 이상 교사에 의해 교실에서 제외되는 조치가 취해진 학생은 향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학교장 정학에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G. 1-5일간의 교장의 정학 조치
- 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J. 수업일수 기준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조치와 수업일수 기준 30-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
- K. 1년간의 정학 및 6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조기 복교가 검토되는 교육감의 1년 정학 조치 및 대안 프로그램 배정
- L. 조기 복교 가능성 없는 교육감의 1년 정학 조치 및 대안 프로그램 배정
- M.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 월 1 일 이전에 17 세가 된 일반 교육 학생들의 경우에 한함)

6 학년 -12 학년 5 등급

위반 -심각한 위험 행위 및 폭력 행위

- B52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B53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 B54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 B55 집단 폭력 사건 계획, 선동 및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과 함께 가담한 경우
- B56 *폭력조직과 관련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
- B57 성적 폭력 또는 강요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성적 인 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
- B58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및/또는 술을 판매 또는 공급
- B59 범주 I 에 정의된 흥기류 중, 총기 이외의 흥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
- B60 범주 II에 정의된 흥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기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협박하거나 시도한 경우
- B61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 I 에 정의된 흥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기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협박하거나 시도한 경우 (17세가 되는 학년도에 학업을 마치지 않은 학생의 경우 L, 17세가 되는 학년도에 학업을 마친 일반교육 학생의 경우 M)
- B62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 I 및 범주 II 에 정의된 흥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기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경우(17세가 되는 학년도에 학업을 마치지 않은 학생의 경우 L, 17세가 되는 학년도에 학업을 마친 일반교육 학생의 경우 M)
- B63 **총기 소지 또는 사용(17세가 되는 학년도에 학업을 마치지 않은 학생의 경우 L, 17세가 되는 학년도에 학업을 마친 일반교육 학생의 경우 M)

* 특정 행동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담당 교직원들은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폭력조직 전담부서(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s Gang Unit)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징계 조치는 위반 사항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회복 컨퍼런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PPT)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정학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는 여러 지도 중재 조치 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재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 조치의 범위

-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조치
- J. 수업일수 기준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조치와 수업일수 기준 30-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
- K. 6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조기 복교가 검토되는 교육감의 1년 정학 조치 및 대안 프로그램 배정
- L. 조기 복교 가능성 없이 교육감의 1년 정학 조치 및 대안 프로그램 배정
- M.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교육 학생들의 경우에 한함)

금지된 흉기류

금지된 흉기류 - I 종

- 권총, 소음 장치가 장착된 총기, 전자 다트(dart), 스텐 총 등의 총기류
- 엽총, 소총, 기관총, 또는 기관총과 유사하거나 개조하여 기관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무기류
- 공기총, 용수철 총, 또는 용수철이나 공기로 발사하는 기타 장비 및 무기, 장전된 탄약통이나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류 일체 (BB 총, 페인트 볼 총 등)
- 날이 튀어나오는 칼, 자동칼, 자동 투창 나이프, 막대검 (칼이나 검이 안에 들어있는 막대)
- 단도, 송곳칼, 단검, 면도칼, 박스 커터, 케이스 커터, 다용도 칼, 기타 모든 칼
- 경찰봉, 검은 가죽으로 싼 곤봉, 짧은 곤봉, 처커 스틱 및 금속 너클
- 샌드백 및 샌드클럽
- 고무총 (작고 무거운 추가 가죽끈에 붙어 있거나 가죽끈으로 발사하는 흉기), 또는 가죽끈의 끝에 무거운 쇠뿔치를 매단 흉기
- 쿵푸 스타, 쌍절곤, 셔킨 등과 같은 무술 도구들
- 폭탄, 폭죽, 포탄 등과 같은 폭발물

금지된 흉기류 - II 종

- 염산, 또는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최루성 스프레이, 눈물이 나게 하는 가스)
- *가짜 총 또는 가짜 흉기
- 장전된 탄약통이나 공포탄, 또는 기타 탄약
- 스텐 흉기
- 흉기로 사용될 수 있거나 흉기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도구, 또는 끝이 뾰족한 도구 (예: 가위, 손톱 가는 도구, 깨진 유리, 쇠사슬, 철사)
- * 범주 II 에 나열된 품목 중,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손톱 가는 도구)을 소지한 혐의로 정학을 요청하기 전에, 교장은 경감요인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합니다. 또한, 교장은 가짜 총이 진짜 총처럼 보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색깔, 크기, 모양, 외관 및 무게 등의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

다음의 징계 조치는 반드시 교육감 규정 A-443의 모든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의 퇴실 조치

수업 중 심하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거나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을 한 학생은 교사에 의해 1-4일간 퇴실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퇴실 조치된 학생은 수업 내용 및 과제를 포함한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내 지정 장소로 보내 집니다.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된 후, 또다시 퇴실될 만한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합니다.

교장의 정학 조치

학생의 행동이 본인, 또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수업 또는 기타 학교 활동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 교장은 해당 학생에게 1-5 일간의 정학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정학 조치된 학생에게는 과제 및 수업시간에 다른 내용을 포함한 대체 학습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장의 정학 조치

교육장은 6일 이상의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정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본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증거 및 증인을 제시하고 학교측 증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공청회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일 학교측이 혐의를 증명하여 교육장의 정학 조치를 받게 될 경우,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은 위반 행위의 종류, 학생의 연령, 성숙도, 과거 징계 기록 및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징계 조치 가운데 하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즉각 복학

정학 조치 결정이 확정된 즉시,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은 해당 학생을 정학 조치가 취해졌던 학교로 복교시킬 수 있습니다.

•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은 수업일수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정학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대체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학교 외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학 기간이 끝나면 학생을 원래 다니던 학교로 반드시 복교시켜야 합니다.

- **수업일수 기준 30-60일 이후 조기 복교 검토를 하는 수업일수 기준 30-90일 사이의 연장 정학**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은 수업일수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정학 처분하고 대체 학습 장소로 배정하며 30일 이상의 정학에는 수업일수 기준 30 또는 60일 이후 조기 복교를 위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 복교하는 날짜를 결정할 때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은 가능한 한 학교 일정을 고려해 연속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 복교가 결정되지 않으면 남은 정학기간 동안 학생은 대체 학습 장소에 남게 될 것이며 정학 기간이 끝나면 학생을 본교로 복학시켜야 합니다.

- **6개월 후에 조기 복교를 위한 자동 검토가 이뤄지는 1년 정학 처분을 받고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조치**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 및 지역 교육장 지명인은 6개월 후에 조기 복교를 위한 자동 검토와 함께 학생에게 1년간의 정학을 명하고 대안 교육 현장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복교가 결정되지 않으면 남은 정학기간 동안 학생은 대안 교육 현장에 남게 될 것이며 정학 기간이 끝나면 학생을 본교로 복학시켜야 합니다.

- **조기 복학 조치 청원의 기회 없이 1년 정학 처분을 받고 대안 교육 현장에 배정되는 정학**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 및 지역 교육장 지명인은 학생에게 조기 복학 청원의 기회를 주지 않고 1년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년의 정학 기간 동안 학생은 반드시 대안 교육 현장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1년의 정학 기간이 끝나면, 해당 학생은 정학 조치가 취해졌던 학교로 복학하게 됩니다.

-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교육 학생의 경우에 한함)**

일반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년도 시작일 이전에 17세가 된 학생에 한하여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전학 선택권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 지역 교육장은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정학 조치 결정 중 어느 때나 또는 정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학업상 혹은 행동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복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또한 전학을 시키거나 다른 곳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학생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장은 비자발적 전학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 규정 A-450 참조.

정학 조치 결정 중 어느 때라도, 장애 학생의 복교 조치가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장은 배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 교육 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에 학생을 위탁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전학은 교육감 규정 A-44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